
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 해설

2011. 3



Copyright © 2003 by Charm Accoun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, stored in a retrieval system,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— electronic, mechanical, photocopying, recording, or otherwise — without the permission of Charm Accounting Corporation.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.

- I. 개정개요
- II. 창투자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

1. 개정개요

주요 개정내용

구 분	내 용
유사기관에의 준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존 지침에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었음 ▪ 개정된 지침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
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지침 구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존 지침에서는 유가증권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기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음 ▪ 개정된 지침에서는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‘벤처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기준’에 따라 측정하도록 구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소측정: 공정가치(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,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업을 사용하여 결정) ▪ 후속측정: 공정가치 단,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취득원가로 평가 -> 손상문제가 바로 발생함. ▪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은 보고기간말마다 회수가능액을 분석하여 손상여부를 판단해야 함. 회수가능액은 유가증권발행자의 순자산을, 자산별로 시장가격, 공시지가, 또는 감정금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치임.
회계용어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의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용어의 변경 (ex : 대차대조표 -> 재무상태표) ▪ 재무제표 변경 (ex :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삭제) ▪ 회계처리방식의 변경 (ex : 엮가매수차익 등) ▪ 구조조정투자자산의 삭제 : 산업발전법 구조조정투자전문회사제도 폐지에 따른 삭제

II. 창투자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

구체적인 개정내용

구 분	개정전	개정후
<p>유사기관에의 준용 (지침 제2조 2항 및 해설 제2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N/A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또는 투자조합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. ▪ ex : 부품·소재전문투자조합의 창투자 회계처리지침 준용
<p>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지침 구체화 (지침 제15조 2항 및 해설 제11조 2항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N/A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활성시장 존재 :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▪ 활성시장 존재X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정한 ‘벤처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기준’에 따른 가격

II. 창투자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

구체적인 개정내용

구 분	개정전	개정후
주요용어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차대조표일(회계연도말) ▪ 중대한 영향력 ▪ 채무면제이익 ▪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한 사건 ▪ 금융비용 자본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고기간 종료일(보고기간말) ▪ 유의적인 영향력 ▪ 채무조정이익 ▪ 보고기간 후 사건 ▪ 차입원가 자본화
재무제표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차대조표 ▪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결손금처리계산서) ▪ 대차대조표 양식 중 창업투자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사이에 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무상태표 ▪ 삭제 (단,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외) ▪ 재무상태표 양식 중 창업투자자산 유동, 비유동항목 구분
구조조정투자자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구조조정투자자산 관련조문 및 재무제표 양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삭제

II. 창투자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

구체적인 개정내용

구 분	개정전	개정후
유가증권 (해설 제11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득원가 : 제공한 대가 + 취득부대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득원가 : 공정가치 + 거래원가 (단,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거래원가를 당기손익 인식)
복합금융상품 (해설 제13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환사채,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시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처리(부채, 자본 분리인식X)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시 신주인수권의 가치 별도 인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채 구입시 전환권, 신주인수권의 가치 별도 인식 전환권,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성시장 존재 :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- 활성시장 존재X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정한 ‘벤처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기준’에 따른 가격
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(해설 제20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대손충당금은 간접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매 기간말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대손충당금은 직접차감 및 간접차감 형식 선택가능
유형자산 (해설 제20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가법만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가법 및 재평가법 선택 가능

II. 창투사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

구체적인 개정내용

구 분	개정전	개정후
<p>무형자산 (해설 제17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의영업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래에 발생할 기대손실 : 실제 발생시점에 환입 - 기타의 부의영업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정가액 해당금액 : 가중평균내용연수동안 상각 · 공정가액 초과금액 : 매수일에 손익인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염가매수차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의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일에 당기손익(염가매수차익)으로 처리
<p>종업원급여 (해설 제24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퇴직급여충당부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퇴직급여 : 확정기여제도, 확정급여제도 구분 ▪ 퇴직급여충당부채 외 퇴직연금, 퇴직보험관련 계정 신설 (지침 재무제표 별지 양식 참조)
<p>수익인식기준 (지침 제24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현금주의 : 수익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현금주의 문구 삭제

II. 창투사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

구체적인 개정내용

구 분	개정전	개정후
<p>주당이익 (지침 제20조 및 해설 제31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침 제20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이 아닌 경우 주당이익 공시배제 규정 존재 ▪ 해설 제31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희석주당이익 규정 존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침 제20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삭제 → 실질적으로 기본주당이익 공시를 의무화 ▪ 해설 제31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삭제 → 실무 고려 희석주당이익 공시 배제
<p>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(해설 제30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화폐성 :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 ▪ 비화폐성 : 취득시 환율로 환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화폐성 :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 ▪ 역사적원가 측정 비화폐성 :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▪ 공정가치 측정 비화폐성 :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
<p>회계변경과 오류수정 (해설 제34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감가상각방법 및 무형자산상각방법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급법 / 회계정책의 변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감가상각방법 및 무형자산상각방법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진법 / 회계추정의 변경

II. 창투자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

구체적인 개정내용

구 분	개정전	개정후
<p>주식 (해설 제34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6.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함으로써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외화자산·부채의 내용,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 ▪ 19.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 ▪ N/A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6.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, 기초와 기말금액 및 그 변동 내역 등 ▪ 19. 보고기간 후 사건 ▪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